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선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583 발의연월일: 2024. 12. 17.

발 의 자: 강선우 · 위성곤 · 임오경

김영호 · 서미화 · 전현희

김동아・김 윤・진성준

김윤덕 · 조승래 · 박해철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의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실상은 그에 반해 지역 간 사회서비스 제공 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.

예를 들어,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 등을 이용하도록 도와주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, 인천 강화·웅진, 경북성주·영양·울릉 등 11개 지역에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단 한곳도 설치되지 않아 해당 지역의 발달장애인들은 동 사회서비스를 아예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.

이에 지역별 사회서비스 공급·이용 현황 등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,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사회 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을 포함하도 록 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의 지역별 편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(안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전단 중 "사회서비스 실태조사"를 "제5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신설한다.

2의2. 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사회서비스 실태조사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- 1. 지역별·생애주기별·서비스영역별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, 이용 현황 및 이용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
- 2.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등에 관한 사항
- 3. 그 밖에 사회서비스 정책 수립·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, 그 밖에 필

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	제5조(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
립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	립 등) ①
사회서비스의 발전 및 지원을	
위하여 <u>사회서비스 실태조사</u>	제5조의2에 따른 사회서
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	<u>비스 실태조사</u>
의 협의를 거쳐 사회서비스 기	
본계획(이하"기본계획"이라 한	
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	
다. 이 경우 기본계획은 「사회	
보장기본법」 제16조제1항에	
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	
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	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	②
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
1. • 2. (생 략)	1. • 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2의2. 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
	한 지역에 대한 사회서비스
	제공 방안
3. ~ 10. (생 략)	3. ~ 10. (현행과 같음)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5조의2(사회서비스 실태조사)
	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
	스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

- 위하여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대한 사회서비스 실 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1. 지역별・생애주기별・서비스 영역별 사회서비스 공급 현 황, 이용 현황 및 이용 만족 도 등에 관한 사항
- 2.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및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등에 관한 사항
- 3. 그 밖에 사회서비스 정책 수 립·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 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
- ②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.